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수급자의 동의 없는 급여의 직권 신청 등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2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수급자의 동의 없는 급여의 직권 신청 등 ..... | 3  |
| 2. 적극행정 인센티브 .....              | 13 |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 16 |



## I. 개요

###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28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14.

(3) 회 부 일 : 2026. 4. 15.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 신청 전에 수급권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수급권자의 발굴·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노력 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31조의2).

##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6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수급자의 동의 없는 급여의 직권 신청 등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급권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등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미리 그 직권신청 계획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급여의 신청) ①·② (생략)<br><u>&lt;신설&gt;</u> | 제21조(급여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미리 그 직권신청 계획안(제2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 |

<신 설>

계획안을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4. 그 밖에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대한 직권신청 계획안의 심의 요청 및 그 심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

③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⑨ 제5항-----  
-----  
-----  
--.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  
-----  
-----  
-----  
-----  
-----제21조제5항-----  
-----  
-----  
-----  
-----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illegible]

----- .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나. 검토의견

-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sup>1)</sup>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21조<sup>2)</sup>에 따르면,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sup>3)</sup>에서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1)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등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sup>4)</sup>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326)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동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직권신청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급여<sup>5)</sup>에

---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에 맞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개정하는 것이 법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급여의 신청에 관한 현행법 조문 비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 <p>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p> <p>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p> | <p>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p> <p>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에 따른 위기가구의 범위는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위기가구의 경우 발굴된 즉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을 연계하되,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기가구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심리적 도피 등 동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직권신청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최근 5년간 위기가구 발굴 현황 >

(단위: 건)

| 연도     | 발굴 대상     | 지원 소계   | 지원 구분   |         |
|--------|-----------|---------|---------|---------|
|        |           |         | 공공 지원   | 민간 지원   |
| 2021년  | 1,339,909 | 663,874 | 165,195 | 198,679 |
| 2022년  | 1,208,086 | 606,101 | 129,799 | 446,302 |
| 2023년  | 1,388,689 | 686,439 | 131,813 | 554,566 |
| 2024년  | 1,423,466 | 831,660 | 252,425 | 579,235 |
| 2025년* | 1,371,215 | 875,525 | 296,602 | 578,923 |

\* '26.5.1. 기준(변경 가능성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현행법 제21조제3항6)에 따르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비록 사회보장급여가 수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sup>7)</sup> 등을 동의없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제공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직권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심의·의결 절차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실질적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은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법 제20조<sup>8)</sup>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846)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2. 적극행정 인센티브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발굴·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u>제31조의2(적극행정 인센티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발굴·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포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u> |

## 나. 검토의견

□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임용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 등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표창 및 포상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sup>9)</sup>,

수급권자의 발굴·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가능한 상황임.

□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조사·결정 업무는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분야로서, 신청주의를 보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 9) 「공무원임용령」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행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2. 균형인사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사행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실시, 부상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 「행정규제기본법」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판단과 개입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적극행정과는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 직권신청, 수급자격 확인 및 연계 지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급자 결정 및 급여 실시는 시·군·구청장(보장기관)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급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므로, 직권신청에 자문, 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보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0조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동의 없는 직권신청은 본인의 동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직권신청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의 자산 및 금전적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명의인의 서면 동의가 원칙이며, 법원의 제출명령·영장, 과세자료 제공, 채납자 재산 조회 등 한정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복지급여 직권신청 관련 당사자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범위·절차로 한정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직권신청 절차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이 효율적이고 공무원 면책규정 마련이 필요함. 직권신청 대상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능력 미약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가 필요함.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민원이 우려되므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함.

\*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              |
|--------------|
| 문 의 처        |
| 02)6788-5497 |